

#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897
----------	-----

발의연월일 : 2009. 10. 1.

발 의 자 : 김성숙·이명숙·박승희 의원  
(찬성자 4인)

## □ 제안이유

- 가. 문화콘텐츠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세계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함에 따라
- 나. 시 차원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3조)
- 나.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제작자, 창업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4조, 제5조, 제6조)
- 다. 시장은 국내·외 기업유치,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라. 시장은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 마.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2조)
- 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를 둠.(안 제13조)

- 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0조)
- 아. 시장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육성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22조)
- 자.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 권한을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23조)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라 함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수·구청장과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제5조(제작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창업의 지원 등)**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기업 등 유치)**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 등이 인천광역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제4조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문화콘텐츠산업에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술개발)**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콘텐츠 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 ① 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거 지정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와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이 추진하는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거나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활용하게 하거나 그 건축물에 지원시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단지 및 진흥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4.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인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산업소관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명
2.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산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문화콘텐츠육성기금의 설치)** 시장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 권한을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p>관계법령</p>	<p><input type="checkbox"/> 문화산업진흥 기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조(정의)</li> <li>-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li> <li>- 제7조(창업의 지원)</li> <li>- 제10조(제작사의 제작지원)</li> <li>- 제2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li> <li>- 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li> <li>- 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li> <li>- 제28조의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li> <li>- 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li> </ul> <p><input type="checkbox"/>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li> </ul>
<p>관련법규 정비대상</p>	
<p>관련자료</p>	

# 관계법령 발취사항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아.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5. "디지털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6.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7.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8. "공공문화콘텐츠"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국립 박물관, 국립 미술관, 국립 미술관 등에서 보유·제작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9. "에듀테인먼트"란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0.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11. "제작"이란 기획·개발·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형·무형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2. "제작자"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법인·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13. "문화산업완성보증"(이하 "완성보증"이라 한다)이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인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대출·급부(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4. "유통"이란 문화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15. "유통전문회사"란 문화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회사를 말한다.
16. "가치평가"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7. "문화산업진흥시설"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18. "문화산업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기술훈련·정보교류·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9. "문화산업진흥지구"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21.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창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와 제작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활용하게 하거나 그 건축물에 지원시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른다.

**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세워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지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⑥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심의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구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제6항에 따른 지구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본다.

**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상품
2. 문화상품으로서 국제적 규모의 영화제·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광고제 등에 출품할 작품
3. 수출하기 위한 문화상품의 제작
4. 그 밖에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것